

## < 주요 변경 대비표 >

### 1. 변경 대상 펀드(총 7개) 및 주요 변경 사항:

펀드명	모/자 구분	규약 단순 수정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FATCA 문구반영	단독운용체제로 변경 (공시기준 변경)
브릭스 증권 모 (주식)	모	-	0	0
브릭스 증권 자 A(주식)	자	-	0	0
브릭스 증권 자 E(주식)	자	-	0	0
브릭스 밸런스드 증권 자 A(채권혼합)	자	-	0	0
브릭스 연금 증권 자 E(주식)	자	0	0	0
팬유럽 증권 모 (주식-재간접형)	모	0	0	0
팬유럽 증권 자 E(주식-재간접형)	자	0	0	0

###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4년 6월 27일(금)

### 3. 주요 변경사항:

#### [1-1] 신탁계약서 - 브릭스 연금자 E(주식): 단순 수정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 3 조제 4 항제 2 호(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종류 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종류 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후취판매수수료 없음)
부칙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6월2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4항제2호 단순자구 수정)

#### [1-2] 신탁계약서 - 팬유럽 증권 모 (주식-재간접형): 단순 수정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 3 조제 4 항(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자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립될 수 있으며 신규 자투자신탁이 설립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제42조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다.	자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립될 수 있으며 신규 자투자신탁이 설립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제43조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제한)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제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부칙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6월2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4항, 제19조 단순자구 수정)

[1-3] 신탁계약서 - 편유럽 증권 자 (주식-재간접형): 단순 수정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내에서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제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부칙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6월27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단순자구 수정)

[2] 투자설명서 - 펀드별 변경 사항은 상기 표 참조

- 운용전문인력 공시관련 변경

[단독운용체제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운용인력(기존 책임운용인력)만을 기재]

-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하의 세금신고 의무 및 미국인투자제한 강화 등

구 분	현 형	변 경(안)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2014.6.1시행)에 따른 수정 사항 반영  FATCA 관련 유의문구 신설	1. 투자판단시 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공시관련 변경

<p>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미국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하의 세금신고 의무</p>	<p>이 투자신탁은 미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미국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 미국에서 얻은 소득 및 이 투자신탁에게 이자·배당금을 가져다 주는 자산의 매각 수익 각각의 30%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세청 또는 재무부는 아직 협정 양식(Form)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니다. 미국세청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위 규정의 운영은 현저히 확대될 수도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규정 및 제공·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 및 정보 보고·공개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 추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는 2010년 3월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의 일부로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는 회사로 하여금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 또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적용을 받는 기타 외국 기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특정 정보를 미국 국세청(“미국세청”)에 직접 보고하고 이를 위하여 신원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를 준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은 회사에 미국원천소득 및 미국 소득을 창출하는 의 총 매각대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시행을 위한 상위규정인 미 재무부 규정(US Treasury Regulations)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정부간 협약(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Model I을 체결한 한국의 당해 IGA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 조항에 의거하여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회사는 투자자의 미국 조세 지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특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특정 미국인, 미국 소유의 非미국법인(US owned non-US entity), 비참가 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혹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한국 조세당국에 보고하며, 한국 조세당국은 이를 다시 미국세청에 보고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위할 경우 회사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원천징수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펀드의 수익자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판매중개회사들은 회사의 기존 방침 상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의 계산으로 펀드의 수익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그러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의 양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미국인이 수익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회사는 그 재량으로 해당 수익을 강제 환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익자들은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의거 “특정 미국인”의 정의가 현행 “미국인”의 정의 보다 더 확대된 범위의 투자자를 포함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p>
<p>제 2 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5) 미국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 제한</p>	<p>(5) 미국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 제한 -----생략-----이                    투자신탁의 수익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의 계정으로 또는                    미국인이 직간접적인                    실질                    소유자인 비미국인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 ---이하 생략---</p>	<p>(5) 미국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 제한 -----생략-----이 투자신탁의 수익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의 계정으로 또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미국인은 미법에 의한 Regulation S 의 Rule 902 또는 1986년 미내국세법(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이후 개정본 포함)(“미내국세법”)에서 정의된 자를 의미하며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서 정하는 자를</p>

	<p>(6) - 신설</p>	<p>포함합니다. ---중략---</p> <p>미내국세법에 정하는 미국인이란 (i) 미국 시민이나 거주인, (ii) 미국 또는 이의 지방단체 법상 조직된 조합 또는 동 법상 조직된 것으로서 미연방소득세법상 조합으로 취급되는 기타 사업체, (iii) 미국 또는 이의 지방단체 법상 설립된 것으로서 미연방소득세법상 법인으로 취득되는 법인이나 기타 사업체, (iv) 자금원과 상관없이 그 소득에 대해 미연방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재산권(estate), (v) (a) 미국 법원이 경영에 대해 주요 감독권을 행사하는 곳으로서 1 인 이상의 미국인이 거의 모든 경영권을 가지는 신탁 또는 (b) 1996 년 8 월 20 일 현재 존속하는 신탁으로서 미국인의 지위를 적법이 선택한 신탁을 의미합니다.</p> <p><b>(6) 미국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 (FATCA)하의 세금 신고 의무</b></p> <p>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는 2010년 3월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의 일부로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는 회사로 하여금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 또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적용을 받는 기타 외국 기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특정 정보를 미국 국세청(“미국세청”)에 직접 보고하고 이를 위하여 신원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를 준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은 회사에 미국원천소득 및 미국 소득을 창출하는 의 총 매각대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시행을 위한 상위규정인 미 재무부 규정(US Treasury Regulations)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정부간 협약(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Model I 을 체결한 한국의 당해 IGA 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 조항에 의거하여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2014 년 7 월 1 일부터 회사는 투자자의 미국 조세 지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특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특정 미국인, 미국 소유의 非미국법인(US owned non-US entity), 비참가 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혹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한국 조세당국에 보고하며, 한국 조세당국은 이를 다시 미국세청에 보고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위할 경우 회사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원천징수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펀드의 수익자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판매중개 회사들은 회사의 기존 방침 상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의 계산으로 펀드의 수익</p>
--	-----------------	---

		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그러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의 양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미국인이 수익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회사는 그 재량으로 해당 수익을 강제 환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익자들은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의거 “특정 미국인”의 정의가 현행 “미국인”의 정의 보다 더 확대된 범위의 투자자를 포함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	---

**[3] 간이투자설명서 - 펀드별 변경 사항은 상기 표 참조**

- **운용전문인력 공시관련 변경**

[단독운용체제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운용인력(기존 책임운용인력)만을 기재]

-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하의 세금신고 의무 및 미국인투자제한 강화 등**

	변경전	변경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2014.6.1시행)에 따른 수정 사항 반영  FATCA 관련 유의문구 신설	1. 투자판단시 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이 투자신탁의 수익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의 계정으로 또는 미국인이 직간접적인 실질 소유자인 비미국인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모집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의 계정으로 또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인이 수익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회사는 그 재량으로 해당 수익을 강제 환매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투자실적추이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공시관련 변경

**[4] 운용전문인력 공시관련 변경**

- **단독운용체제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운용인력(기존 책임운용인력)만을 기재**

펀드명	변경전		변경후
	책임	부책임	단독운용역 (기존 책임운용인력)
브릭스 증권 모 (주식)	김영민	장정주	김영민
브릭스 증권 자 A(주식)	김영민	장정주	김영민
브릭스 증권 자 E(주식)	김영민	장정주	김영민
브릭스 밸런스드 증권 자 A(채권혼합)	김영민	장정주	김영민

브릭스 연금 증권 자 E(주식)	김영민	장정주	김영민
팬유럽 증권 모 (주식-재간접형)	장정주	김낙균	장정주
팬유럽 증권 자 E(주식-재간접형)	장정주	김낙균	장정주

※ 2014년 6월 27일자로 상기 투자신탁에 대해 팀(공동)운용 체제에서 단독운용 체제로 변경함에 따라 운용전문인력 공시 기준도 책임/부책임 병기에서 해당 운용인력(기존 책임운용인력)만을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상기일자로 기존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인력에서 말소 처리됩니다.